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16
----------	-------

발의연월일 : 2023. 1. 11.

발의자 : 태영호 · 김도읍 · 김상훈
김석기 · 김성원 · 김학용
안철수 · 윤두현 · 윤재옥
정우택 · 최승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생 략)</p> <p>② <u>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u></p> <p>③ <u>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p> <p>④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②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5조의2(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 신청 특례) ① <u>부과된 출국납부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출국 납부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u></p>